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2. 8 (수요일), 14:00 ~ 17:40

■ 장 소: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이태진, 최성락, 홍승재(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	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3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4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공영주차장 신축	
5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내 묘목 식재 등	
6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	
7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청자박물관 창업지원 센타 신축	
8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조경수 식재	
9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기숙사 증축 등	
10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관광안내소 등 건립	
11	사적 제93호 양산 북정리 고분군 주변 근린공원 조성사업	
12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13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주차장 조성	
14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덕암사 석축 보수	
15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입목벌채 및 수목 조림	
16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교회 신축	
17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주변 간이골프장 조성	
18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주변 근생시설 신축	
19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 이순신	
10	장군 순국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20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출입구 시설물 제작·설치	
2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교량 설치	
22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23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	
24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확장	
25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26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27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 유적 주변 국가수질자동측정소	
	설치	
28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	
29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0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1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33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5건	
【검」	토사항】	
34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검토	
【보	고사항]	
35	사적 제121호 사직단 보수・정비 사업 보고	
36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내 소방도로 개설사업 보고	
27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내 정조대왕 초장지 발굴지역	
37	CCTV 설치사업 보고	
38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관리사무소 건립 보고	
3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2-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 서울 풍납동 토성 내 7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13차 회의(2011.12.14)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12.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o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74필지 276.365㎡
- 추가지정 신청 면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15번지 등 7필지
 1.041㎡(지번 면적조서 별첨)
- 추가지정 후 면적 : 581필지 277.406m²
-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10.10)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레기	ઝો ધ્યો	~) =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선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면적(m²)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9-15	대	119	119			
2	풍납동	144-22	대	112	112			
3	풍납동	126-54	대	192	192			
4	풍납동	221-30	대	290	290			
5	풍납동	221-31	대	42	42			
6	풍납동	152-37	대	112	112			
7	풍납동	259-7	도	174	174			
	계			1,041	1,041			

안건번호 사적 2012-02-002

2.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 허가한 사항('08.4.7)을 수원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2009.3.4)의 조건을 반영하여 변경 신청한 사항임
- ※ 기 시행 중인 '화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0구역/기 승인 층수를 따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최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일원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이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10-15일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91.22m 이격)

ㅇ 내용

구분	기 허가사항 ('08.4.7.)	변경허가 신청사항(5차)	비고 (5차-기허가)
신청인	최소△	최ㅇㅇ	최ㅇㅇ
규모	22동, 지상10~15층	22동, 지상10~15층	-
대지면적	76,218m²	75,979 m²	감 239 m²
건축면적	22,305 m²	16,196 m²	감 6,109 m²
연면적	233,765.65 m²	247,155.69 m²	증 13,390.04㎡
건물 최고높이	49.1m	48.95m	감 0.15m
해발 최고높이	109.1m	114.45m	증 5.35m

라. 추진경과

- 2008. 4. 7. 수원 화성 공동주택 신축 사업 현상변경허가
- 22동, 지하2층, 지상10~15층, 최고높이 49.1m
- 2009. 3. 4. 도시·건축공동위원회(소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공원 위치 변경, 주동의 입면, 필로티 계획 보완 등
- 2010.11.~2011.6.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4차) 불허
- 용적률 증가를 위해 최고높이를 변경한 변경허가 신청 부결
- 2011. 5.30.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당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필로티, 입면 등 보완
- ㅇ 2011. 9.27.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200m 외곽지역 문화재청장 허가권한 없다고 주장
- o 2012. 1.13.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당초 허가대로 해발 최고높이(109.1m)를 준수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2-003

3.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김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등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ㅇ 위치 : 서울 종로구 부암동 338-20(문화재보호구역 연접)
-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8.60m²
- 연면적 : 236.90m²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건물높이 : 7.95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1) 현지조사의견('12.02.03/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서울 한양도성의 연접 주택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 7.95m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연접한 성곽보다 높이가 낮고, 규모가 크지 않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02-004

4.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공영주차장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등
- (3) 신청내용**<공영주차장 신축>**
- 이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432번지 1558호(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1,076.26m²
 연면적: 2.149.72m²
-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 건물높이 : 10.48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차대수 : 62대(지하 1층 29대, 지상 1층 33대)

- (1) 현지조사 의견('12.02.03/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중구 신당동 소재의 한양도성과 연접한 주택지를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0.48m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주민의 공익을 위한 점은 인정되나, 그 높이가 연접 성곽보다 높고, 평슬라브, 화강석 외부마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2-02-005

5. 경주 명활성 내 묘목 식재 등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내 묘목 식재 및 부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7호「경주 명활성」내 묘목 식재 등을 목적으로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박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명활성(사적 제47호)
-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보문동 59번지
- (3) 신청내용<묘목 식재 및 부수 시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동 59번지(문화재 지정구역 내)
- ㅇ 사업내용
- 묘목 식재
- · 감 나 무 30그루(H=1.0 B=1.5) / · 단감나무 20그루(H=1.0 B=1.5)
- ·자두나무 20그루(H=1.2 B=1.5) / ·석류나무 10그루(H=1.0 B=1.5)
- · 살구나무 5그루(H=1.0 B=1.5)
- 비닐하우스 설치(3m×8m) : 상추 고추 등 채소 재배

- (1) 현지조사의견('12.02.0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경주 명활성 지정 구역 내 사유지에 묘목 식재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기존 밭으로 활용되던 곳에 묘목식재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묘목식재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비닐하우스는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므로 제외

안건번호 사적 2012-02-006

6.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울산시 북구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해당함.
- 2011년 제12차('11.11.09) 회의 시 보류된 건이나 사업내용을 보완 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허용기준 제정 이전사업은 최소한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는 원형보존이 필요하며, 제정 이후는 기준 준수
- 경관보호상 최소한의 성·절토를 통한 주변지형의 법면 최소화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울산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
- (3) 신청내용**<산업단지 조성>**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문화재구역 인접)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96,602 m²
- 용 도 : 산업시설
- 성·절토 : 성토-최고 20m, 절토-최고 50m
- ※ 건축물은 금회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건축 계획시 별도 심의 사항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1.11.03/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관문성 인접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은 임도와 소하천이 경계하고 있고 사업대상지는 과수원과 소나무, 잡목 등 으로 자연림이 우거진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관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 성 밖 200m까지의 지형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시 과도한 성·절토로 인하여 관문성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사료됨.

(2) 추진경과(울산광역시)

- '08.01.17 : 이화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 '08.06.04 : 울산시 문화재 영향검토 (시 문화재위원 3인)

- '08.10.30 :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 '10.08.09 : 토지 보상 완료 및 소유권 이전

- '10.07.27 : 시·발굴조사 착수

- '10.12.31 : 관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11.11.09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보류)

바. 의결사항

-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2-02-007

7.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청자박물관 창업지원센타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청자박물관 창업지원센타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청자박물관 창업지원센타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ㅇ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 외
- (3) 신청내용<청자박물관 창업지원센타 신축>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232-4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
- ㅇ 사업내용
- 창업지원센타 : 철골조, 209.28㎡, 높이 4.4m
- 가마, 비가림시설 : 가마 3기, 295.84㎡, 높이 5m
- 기타 : 5ton 오수정화조설치. 주차대수 3대

- 신청지는 1구역(보존구역)이며, 청자박물관과 인접하여 조성 계획인 청자촌 (도자기 및 공예품 생산업체 입주) 부지의 일부임.
- 2010년 영향검토를 받아 청자촌 부지 조성 완료
- 신축 건물의 성격이 창업지원센터이므로 청자촌 권역에 건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신축 부지 또한 영향검토를 기 실시하였으므로 가마의 구조, 양식과 가림막 시설에 대하여 도자분야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면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장기적으로 청자촌에 조성될 건물의 형태, 규모, 양식 등에 대하여 별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하되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2-02-008

8.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조경수 식재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조경수 식재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위 신청지는 2011년 사적분과 제9차 회의(2011.9.14) 때 오리축사 신축 심의 건으로 부의되어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최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ㅇ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 외
- (3) 신청내용**<조경수 식재>**
- ㅇ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7(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미터 이격)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7.496m²
- 황금사철(H0.3 × W0.4) : 600주
- 사철나무(H0.3 × W0.4) : 100주
- 기타 : 침사지(1.3m × 1.3m) 6개소, 토사측구(0.3m × 0.3m) 323m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9.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기숙사 증축 등

가. 제안사항

경북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서 대학교 기숙사 증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서 대학교 기숙사 증축 등을 목적으로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 79호)
- ㅇ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8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가야대학교 기숙사 중축>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1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90m 이격)
- ㅇ 사업내용
- 건축물 증축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 ·최고높이: 기존건축물 최고높이 18.7m

승강기 증축부분 17.9m, 사우나실 증축부분 5m

· 건축규모 : 기존 (지상5층, 연면적 : 3.512.㎡)

증축 (지상1층, 연면적 : 219m²(철거 4.8m²))

· 건축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생 기숙사)

→ 엘리베이터실 신설 및 여학생용 샤워실 증축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12.02.06/문화재위원 ㅇㅇㅇ)
- ㅇ 기존 건물 (기숙사) 2동 사이에 기존 건물보다 낮게 승강기를 증설하는

것은 기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건물에 붙여 동쪽편에 증축하고자 하는 샤워장(사우나실)은 1층(5m 높이)인 점과 기존 건물과의 높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변 경관과 역사 문화화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지점이 1구역이고 유물산포지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시굴조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사업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후 사업시행 필요

10.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관광안내소 등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 관광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을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고령 지산동 고분군」주변에 관광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 ㅇ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8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관광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
- 사 업 명 :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신축
- 이 위
 치 :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71-1(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1구역)
- ㅇ 사업내용
- 건축규모 : 지상1층 / 1동
- 건축면적 : 94.12m²
- 건축연면적 : 94.12m²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너와지붕
- 건축최고높이 : 4.6m
- 건축용도 :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2.06/문화재위원 ㅇㅇㅇ)
- ㅇ 노후 된 기존 임시 화장실과 안내소는 사적지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고

대가야 축제 시 폭주하는 화장실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상기의 계획(건물높이4.6m 연면적 94.12㎡)대로 관광안내소와 공중 화장실을 신축함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O 단, 문화재청과 협의 하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맞도록 건물의 외부 마감재와 지붕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ㅇ 원안가결
- 건물외관 등은 문화재와 어울리도록 설계 필요

11. 양산 북정리 고분군 주변 근린공원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사적 제93호 「양산 북정리 고분군」 주변에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산 북정리 고분군 주변에 근린 공원을 조성하려는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양산 북정리 고분군(사적 제93호)
-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697번지
- (3) 신청내용<근린공원 조성>
- 위치 : 양산시 북정동 산47-2번지 일원(사업면적 : 18,336m²)
- ㅇ 내용
- 친환경 황토 포장 공법을 도입한 탐방로 조성(740m)
- 재래수종 위주 수목식재(15,000여본/살구나무, 산수유, 매화나무 등)
- 벤치(24개), 안내판(5개), 목재계단(30m), 안전울타리(40m) 등 편의시설 설치
- 현지 자연석을 활용한 돌배수로 설치(517m)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배수로는 최소화하고 탐방로는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료, 재질 등을 보완하여 사업시행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2-02-012

12. 부여 쌍북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이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쌍북리 요지(사적 제99호)
-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이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23-5, 122-1, 121(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
-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91.65m²
- 규 모 : 지상 1층 - 건물높이 : 4.4m
- 구 조 : 경량철골조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13. 강화산성 주변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산성 주변에 강화군청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주차장 조성>**
- 이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141-1외 45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
-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 5,337 m²
- 주차면수 : 하단부 115면, 상단부 77면
- 절토최고높이 : 4m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12.01.03/강화군수)

- 동 사업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6구역이며 주변에 '강화군청', '옛)강화교육청' 등 높은 건물 주변에 위치하여 경관 상 저해할 것은 없으나, 현상변경허용 기준 공통사항 절토2m 이상으로 인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동 사업에 대하여 절토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 심의 대상임으로 절토과정에서 옛 유구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입회조사 조건으로 허가를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사업시행 전에 절토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필요

14. 북한산성 주변 덕암사 석축 보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덕암사 석축 보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북한산성 주변 덕암사 석축 보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이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 ㅇ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일대
- (3) 신청내용<덕암사 석축 보수>
- 이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15-1, 515-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4m 이격)
- ㅇ 사업내용
- 석축길이 93.20m, 석축높이 1.8m(전단)~1.2m(후단), 자연식 석축쌓기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12.01.17/고양시장)
- 신청지는 도지정문화재인 북한산 서암사지에서 약25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 문화재 심의구역에 해당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함
- 사업내용은 2011년 집중 호우로 인하여 석축이 붕괴하였고 이를 복구하여 등산객 및 전통사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02-015

15.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입목벌채 및 수목 조림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에 여주팔경 (입암층암)이 가시되도록 입목벌채 및 수목조림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에 입목벌채 및 수목조림을 하려는 것임.
- ※ 기 시행 중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구역/보존구역)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일원
- (3) 신청내용<입목벌채 및 수목조림>
- 이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14-10번지 외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m 이격)
- ㅇ 내용
- 사업면적 : 107.504m²
- 사업내용 : 입목벌채(21,000m²), 솎아베기(86,504m²)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임야의 입목 벌채 및 수목 조림 사업으로, 영릉 반대편의 수목 벌채시 소나무와 형질이 우수한 참나무는 그대로 보존하고, 가시박덩굴 등 불량입목 만 벌채 후 철쭉, 진달래 등 자생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하기 때문에 법면 토사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2.01.13/문화재위원 ㅇㅇㅇ)

- 영녕릉 주변 입목 벌채로 당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영릉 반대편 수목 벌채시 소나무와 형질이 우수한 참나무는 그대로 보존 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가시박덩굴 등 불량 입목만 벌채하는 것이 좋겠음
- 수목 벌채 후에는 법면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철쭉, 진달래 등 자생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하기 바람(암반 식재 방지)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2-016

16. 고양 서오릉 주변 교회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교회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양 서오릉 주변에 기존 교회를 철거한 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 ㅇ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
- (3) 신청내용**<교회 신축>**
- 이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45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5m 이격)
- ㅇ 사업내용
- 신청면적 1.932m², 건축면적/연면적 885.113m²/3,104.620m²
- 최고높이 20.07m(옥탑포함), 건물높이 14.87m, 지하2층, 지상3층, 옥탑2층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35대
- * 기존교회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높이5m, 건축/연면적 197.6m²/296.4m²

라. 의결사항

-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17. 양주 온릉 주변 간이골프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주변 간이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온릉 주변 간이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제210호)
- 소 재 지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19-1
- (3) 신청내용<간이골프장 조성>
- 위치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16-18(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55m 이격)
- ㅇ 사업내용
- 신청면적 4.980m². 건축/연면적 219m²/208.44m²
- Tee 그라운드(3개소) 38㎡, Green(3개소) 490㎡, 연습 Green(1개소) 234㎡
- 페어웨이(3개소) 1,305m², 벙커(9개소) 186m²
- 저류지(1개소) 467㎡. 부지내도로 445m. 녹지 1.815㎡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1.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양주 온릉의 남서측으로 255m 이격된 폐채석장터에 규모 4,980㎡의 4개홀 간이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기 성토된 채석장 위에 지형변경 없이 실시되는 것으로, 문화재에서도 인지되지 않아 양주 온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온릉 방향으로 부지 외곽을 차폐수목으로 식재하여 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골프장 부지 외곽에 차폐수목 보완 필요

18. 화성 당성 주변 근생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주변에 근생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o 화성 당성 주변에 근생시설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2007년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나, 토목공사 후 사업 추진하지 않아 허가 취소되어 재신청한 건임.
- ※ 기 시행 중인 '화성 당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3구역/8m)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김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당성(사적 제217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
- (3) 신청내용<근생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74-17(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4m 이격)
- ㅇ 내용

구분	신청 내용	2007년 당초 허가내용
대지면적	1,450 m²	좌 동
건축면적/연면적	570 m²/770 m²	454.45 m²/1,154.05 m²
규모	2동, 지상1층/3층	1동, 지상 4층
최고높이	14.3m(평지붕)	17.85m(경사지붕)

라. 의결사항

-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2-02-019

19.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남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2호「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에 순국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정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2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에 순국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당초 허가된 조건의 이행이 불가하여, 이를 변경 허가 신청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사적 제232호)
-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 (3) 신청내용<이순신 장군 순국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ㅇ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
- ㅇ 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87,586 m²	87,899 m²	증313㎡
건축면적	1,404.68 m²	1502.95 m²	증98.27 m²
최고높이	12m	12m	_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또는 제외하는 방안 검토	상징조형물 제외	반영
허가조건	이락사 부분과 기존 산 지형 연계	기존 주차장 부지 수목 식재를 통해 횡축 연결	미반영
	하천 동선 곡선형 조정	곡선형 조정	반영
	진입도로 위치는 유적지에서 이격하여 조성	기존 신청안대로 진입로 유지 및 차폐식재 보강	미반영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테마파크 요소 지양	친환경 잔디 식재 및 직선축을 곡선으로 변경	반영
	화려하지 않은 수목 배식	전통 유실수로 교체	반영
	4차선 도로와 공원부지 차폐 식재	도로변에 유실수 식재	반영

라. 추진경과

- 2011. 6. 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 2011. 7.13. 내용 보완 후 재 심의를 통한 조건부 가결
- 2011. 8.24.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진출입로 위치 변경 협의(남해군→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11. 9. 9. 진출입로 변경(안) 수용 곤라 회신(부산지방국토관리청→남해군)
- o 2012. 1.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남해군)

마. 의결사항

-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2-02-020

20. 연천 전곡리 유적 출입구 시설물 제작·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출입구 시설물 제작·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천 전곡리 유적 출입구 시설물 제작·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ㅇ 소 재 지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출입구 시설물 제작·설치>
- ㅇ 위치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문화재구역 내)
- ㅇ 사업내용
- 조형물 설치 : 높이 5m, 폭 10m, 철골조, 아치형
- 사업비 : 260,000천원(전액 군비)
- * 조형물 컨셉: 현무암(용암) 대지 위에 형성된 전곡리 유적의 특징 표현

- (1) 지자체의견('12.01.30/연천군수)
- ㅇ 설정배경 및 필요성
- 유적입구에서 전곡리유적 고유한 입지적 특징을 부각하여 관람객들에게 유적의 형성 및 성격에 대한 이해 도모
- 2011년 11월부터 유적 관람료 징수에 따른 공식적인 출입구 시설 필요
- 유적입구인 37번 국도변에서 유적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로 활용
- ㅇ 유적의 현황과 지역 특징
- 전곡리 유적은 현무암(주상절리) 대지 위에 형성된 구석기 유적으로, 지역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매년 5월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 주변 한탄강 관광지 조성사업,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적 특징

※ 참고사항: 그간 유적 내 볼거리 설치 사업 추진현황

년도	사업별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2007	기본계획수립	볼거리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26,237	
2008	실시설계용역	원시식생복원 및 조형물 배치 실시설계용역	12,570	
	멸종동물설치	꼬끼리 및 쌍코뿔이 4기	167,650	
2009	고인류조형물	고인류 복원 조형물 3기	19,300	
2009	조경사업	볼거리설치지역 내 원시식생복원	150,997	
	잔디식재	볼거리설치지역 내 잔디식재	52,432	
2010	원시생활복원 조형물	멸종동물(6기) 및 원시생활복원조형물(8기)	190,000	
계			619,186	군비100%

마. 의결사항

- ㅇ 부결
- 문화재의 경관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2-02-021

21.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교량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농경지 진출입용 교량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교량을 설치하려는 것임.
- ※ 기 시행 중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구역/ 보존구역)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안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 27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농경지 출입용 교량 설치>
- 위치 :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 486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0m 이격)
- ㅇ 내용
- 교량길이 : 26m
- 너비(폭) : 4m
- 구 조 : 콘크리트 라멘 구조
- ㅇ 보완사항
- 교량의 폭을 5m에서 4m로 줄이고, 설치 위치를 조정

- (1) 현지조사의견('12.02.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에 소재하는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지정구역과 비지정요지 구역에 연접하고 보존구역에 길이 26m, 너비 4m의 농업용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 농기계가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없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하천의 폭이 20여m에 달하여 별도의 진입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교량의 규모가 축소되고 문화재와 경관상 거리가 먼 북동측으로 위치를 검토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교량 설치 위치 조정 후 사업시행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2-02-022

22. 파주 수길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수길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김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 ㅇ 소 재 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1-15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4-2, 203(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6m 이격)
- ㅇ 사업내용
- 신청면적 1.985m². 건축/연면적 219m²/208.44m²
- 2개동, 1층, 최고높이 6m,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외부마감)
- 주차 4대, 절토 812.58㎡, 옹벽 2m

- (1) 현지조사의견('12.01.20/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상기의 지역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문화재 검토지역이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6m 이격된
 지역의 능선 밖에 있으며, 문헌조사 및 현지실사 결과 역사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 판단됨
- 소령원의 전면부에 속하며 수길원 좌측능선 외관에 속하는 지역이며,
 소령원의 전면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여러 개의 능선을 넘어 입지하는 지역으로 건물신축 후 건물지붕선이 소재지의 뒷면에 있는 능선을

넘지 않는 조건이라면 역사경관보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 뒷면의 절개지를 화계형(花階形)으로 하여 지반의 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한 부지 정비와 부지 뒷면의 역사경관림 보존 및 복원에 주의가 요구됨

(2) 지자체의견('11.12.15/파주시장)

○ 금번 사업 신청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구역(심의구역)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는 건으로, 임야의 최대절토가 약 11m 발생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사업부지의 절토는 최소화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2-02-023

23.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김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제367호)
-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6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6m 이격)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1.610m², 건축면적/연면적 267.80m²/397.92m²
- 2개동, 지상 2층, 최고높이 11.45m
- 외벽: 적벽돌치장쌓기, 화강석붙이기, 복층유리
- 지붕 : 경사지붕, 징크판
- 오수처리시설 2개소, 철근콘크리트 구조

- (1) 지자체의견('12.01.27/남양주시장)
-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는 산이 있어서 문화재에서 신청 지가 직접 보이지는 않으며, 기 허가받은 연립주택 측후면부에 해당되는 지역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02-024

24. 남양주 영빈묘 주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확장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제367호)
-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3) 신청내용<체육시설 부설주차장 확장>
-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3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3m 이격)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1,575m², 주차대수 43대
- 토 공 : 절토 1,782m³, 사토 1,585m³
- 배수공 : 산마루측구(600×600) 88m
 - 우수관(D600) 210m, 우수받이 15개, 우수맨홀 10개, 집수정 1개
- 포장공 : 아스콘 1.369㎡, 보조기층 274㎡, 보차도경계석(180×200×1.000) 393m
- 구조물공 : 자연석쌓기(H=0.5~3.0m) 202m, 27.1㎡

- (1) 지자체의견('12.01.06/남양주시장)
-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허가 (문화재청 2008.7.8.) 받아 준공된 진접체육문화센터의 부설주차장을 확장하 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는 산이 있어서 문화재에서

신청지가 직접 보이지는 않으며, 임야의 원지형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주차 장으로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음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02-025

25. 강진 전라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전라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이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전라병영성(사적 제397호)
- ㅇ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19-1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30-5(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미터 이격)
- ㅇ 사업내용
- 용도/ 구조 : 단독주택 / 경량철골조
- 규모 : 건축면적 89.61㎡ / 높이 5.5m (지상1층)
- 기타 : PE단독정화조 5인용, 주차대수 1대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지붕재는 기와 형태로 조정 필요

26. 부여 관북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관북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백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 제428호)
-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71-4외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74-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259.89m²
- 규 모 : 지상 1층
- 건물높이 : 3.9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참고자료

(1) 지자체 의견(부여군)

○ 주변에 건물이 1~3층 규모의 건물이 잔존하고 고도보존및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역사문화환경지구 중 백제전통음식거리로 설정되어 지구 지정이 예정된 지역으로 건물을 신축하여도 문화재 경관상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된됨. 그러나 관북유적과 구아리 백제유적이 인접하고 있어 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되 건축은 경사지붕으로 신축 필요

27. 공주 정지산 유적 주변 국가수질자동측정소 설치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 유적」 주변 국가수질자동 측정소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정지산 유적 주변 국가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정지산 유적(사적 제474호)
-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 일위
- (3) 신청내용<국가수질자동측정소 설치>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495-19(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00m~520m)
- ㅇ 사업내용
- 채수시설 설치(1개소)
- 측정소 건물 신축
- · 건축면적 : 53.04m²
- · 구조 : 조립식 철골조 센드위치 판넬

라. 의결사항

-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2-02-028

28.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현상 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사적 제396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외
- (3) 신청내용<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 1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최고높이 5m (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o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2구역	○ 최고높이 8m (2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3층) 이하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상 작성범위는 200m임.
- ㅇ 사적지 주변은 대부분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
- ㅇ 문화재구역이 성벽 외곽으로 완충구역을 두고 지정되어 별도의 보존지역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00m 이내는 1층 규모, 100~200m 범위는 2층 규모 이하로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바깥으로는 제주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면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ਦ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o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최고높이 11m(2층) 이하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1.1월/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은 주변 지역이 대부분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
- 북동측의 고성리 마을은 1~2층 규모, 토성을 둘러싼 도로 주변은 일부 건물이 위치함.
- 지정 구역 내부의 일정 구간 안쪽으로 토성이 존재하여 별도의 원지형 보존구역 선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황을 고려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구역은 1층 규모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하여 허용.
- 100~200m 범위는 2층 규모의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하여 허용
- 200~500m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면 제주 항파 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문화환경과 현황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2-029

29.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외

(3) 신청내용<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ਦ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 선행	○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 선행	
3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상 작성범위는 500m임.
- 제주 고산리 유적 인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과 수월봉 화산 쇄설 층이 위치해 있음.
- 북측에 형성된 고산리 포구 마을은 1~3층 건물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므로

3층 이하로 규제하고 바다를 포함한 그 밖의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丁亚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3층) 이하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1.1월/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제주 고산리 유적의 서측은 바다로 차귀도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이 접하고 있고, 남측은 제주 수월봉 화산 쇄설층의 지정구역이 있으며, 북동측은 당산봉(기생화산), 동측은 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 북측은 고산리 포구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1~3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음.
- 북측의 마을은 현황을 고려하여 3층 규모, 북동측의 당산봉 구역과 동측의 밭, 남서측의 바다를 포함한 구역은 원지형 보존구역으로 한다면 고산리 유적의 역사문화화경과 현황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2-030

30.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양동 유적(사적 제416호)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660-5번지 외

(3) 신청내용<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丁ゼ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4m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 (4층)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7m (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1m (5층) 이하
6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경 포함한 높이로 한다. 	용한다.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상 작성범위는 200m임.
- 제주 삼양동 선사 유적의 주변 도로는 보존하고, 북쪽은 바다와 연계된 경관 보존을 위해 인접구역은 1층, 더 먼 곳은 2층으로 제한함.
- ㅇ 남동쪽 빌라. 상가 지역은 2층 이하로. 그 밖의 삼부비치아파트(9층). 장원

삼양아파트(9층) 등이 있는 고층건물 지역은 5층 이하로 관리해 나간다면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ਦ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r	n(1층)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	n(2층)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7m(5층) 이하 ○ 최고높이 20m	n(5층) 이하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등	준함.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단체 조례 등 포함)을 변경할 경우 문화재청의 선생기를 보증하게 되었다. 	회 또는 지방자치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1.1월/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제주 삼양동 선사 유적은 주변이 1~4층 규모의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측 바다 방향으로 삼부비치아파트(9층), 장원삼양아파트(9층) 등이 있음.
- ㅇ 북측으로는 일부 개발되지 않아 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구역이 존재함.
- ㅇ 제주 삼양동 선사 유적을 둘러싼 도로는 보존구역으로 함.
- 그리고, 북측의 바다와 연계된 낮아지는 지형은 현황을 고려하여 인접 구역이 1층 규모, 그 보다 먼 바다와 접한 구역은 2층 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남동측의 아파트, 상가로 된 지역은 단계적으로 하여 2층 규모, 그
 외 서측의 길 건너와 북동측의 먼 곳은 5층 규모로 한다면 제주 삼양동
 선사 유적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2-031

31.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장흥 석대들 전적(사적 제498호)

ㅇ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외

(3) 신청내용<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ਦ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지역 ○ 신축불가, 기존 범위내 개·보수 가능	
2구역	○ 신축, 증·개·재축 가능 ○ 1층(5m) 가능	○ 신축, 증·개·재축 가능 ○ 1층(7.5m) 가능
3구역	○ 신축, 중·개·재축 가능 ○ 2층(8m) 가능	○ 신축, 중·개·재축 가능 ○ 2층(12m) 가능
공통사항	○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경 ○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특	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상 작성범위는 300m임.
- 작은 석대, 큰 석대 주변 임야와 논밭은 개발로부터 보존하고, 마을 구간은
 1층 규모로 허용하되, 연접지역은 경사지붕으로 제한함. 동편의 고층건물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르도록 함.

영회원 주변 또한 임야는 보존하고, 진입로 쪽 마을은 경사지붕 1층 규모,
 더 먼 지역은 2층 규모, 그 바깥으로 개발이 진행된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르도록 한다면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丁七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포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_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타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 포함)을 변경할 경우 문화재청의 심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포함한 높이로 한다.	허용한다. ,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1.1월/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장흥 석대들 전적은 작은 석대, 큰 석대, 영회당 세 구역으로 이루어진 사적지로서, 작은 석대와 큰 석대는 연접하여 위치하고, 북측으로 1km정도 이격된 곳에 영회당이 위치하고 있음.
- 작은 석대, 큰 석대 동남측에 논밭이 펼쳐져 있고, 동·남·서측은 임야, 북측은 기존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음. 영회원은 남북이 산으로 된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측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더욱 동측은 학교와 공장 들로 구성되어 있음.
- 작은 석대, 큰 석대의 서남측 논과 임야는 보존구역으로 하고, 북측 마을에 문화재와 연접구역은 경사지붕 1층 규모. 더욱 북측의 마을은 1층 규모로 함.
- 영회원 주변을 둘러싼 임야는 보존구역, 진입로가 있는 마을은 1층 규모, 그 동측 길 건너는 2층 규모, 그 더욱 동측은 도시계획에 따른다면 장흥 석대들 전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현황이 조화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하되, 큰석대와 작은석대의 허용기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2-02-032

3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신규 제정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의 신규 제정 및 조정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12.1.31)에서 검토·조정하여 상정하는 사항임.

다. 소위원회 개최내용

ㅇ 개최일시 : 2011. 1. 31(화) 14:00

○ 참 석 자 : 문화재위원 노중국, 김권구, 이해준, 이상필

문화재전문위원 김철주

ㅇ 회의안건 및 결과

순번	대상문화재	소재지	회의결과	비고
1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 사적 제350호 경주 구정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원안 가결	조정
	사적 제28호 경주 성덕왕릉 사적 제184호 경주 효소왕릉 시도유형문화재 제96호 성덕왕릉 귀부	경북 경주시	○조건부가결 - 광고영상박물관 부지는 3 구역에서 2구역으로 조정 - 광고영상박물관 부지외 나 머지는 현행 유지	조정
1	사적 제30호 경주 홍덕왕릉 천연기념물 제318호 경주 육통리 회화나무 시도문화재자료 제188호 구강서원	경북 경주시	o 원안가결	조정
4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경북 경주시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조정
5	사적 제48호 관문성	경북 경주시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신규

순번	대상문화재	소재지	회의결과	비고
6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사적 제491호 영주 금성대군 신단 보물 제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문화재자료 제347호 순흥향교	경북 영주시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반영	조정
7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사적 제263호 경주 동방동 와요지	경북 경주시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반영	조정
8	사적 제190호 경주 전 민애왕릉 사적 제220호 경주 희강왕릉	경북 경주시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조정
9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경북 경주시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조정
10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시도기념물 제85호 종오정 일원	경북 경주시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조정
11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전북 김제시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반영	조정
12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ㅇ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반영	조정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 사적 제350호 경주 구정동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Tt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포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_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	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다	타 이와

(2) 사적 제28호 경주 성덕왕릉, 사적 제184호 경주 효소왕릉, 시도유형문화재 제96호 성덕왕릉 귀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41 74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3) 사적 제30호 경주 홍덕왕릉 등 3건

(사적 제30호 경주 홍덕왕릉, 천연기념물 제318호 경주 육통리 회화나무, 시도문화재자료 제188호 구강서원)

7.14	현상변경허용기준(안)		ען דע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_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	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4)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6건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사적 제491호 영주 금성대군 신단,

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 묘, 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문화재자료 제346호 순흥향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ען די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기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 -]준으로

(5)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등 2건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사적 제263호 경주 동방동 와요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꼬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_	o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한옥형태에 한해서 허용)	
3구역	_	O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한옥형태에 한해서 허용)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신설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	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6)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 ਦ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교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 최고높이 5m (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최고높이 7.5m (1층) 이하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	○ 12m(2층) 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타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것을

(7)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3건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7 19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02-033

33.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5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고양 행주산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o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5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여 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신ㅇㅇ	 <다가구주택 신축> 이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3(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m 이격) ○ 내용 * 기존구옥 규모 : 1층, 연면적 59.17㎡, 흙벽돌 목조 - 사용면적 378.13㎡, 건축면적/연면적 225.24㎡/39922㎡ - 지상3층(3가구), 최고높이 14.3m, 철근콘크리트조 - 오수정화조 24인용, 조경시설 21.47㎡, 주차시설 4대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2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김ㅇㅇ	< <-생시설 부지조성>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77-15 ○ 내용 - 부지면적 5,377㎡, 건축면적 1,188㎡(6동), 지상 1층(최고높이 : 7.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 구역)
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한ㅇㅇ	 <다가구주택 부지조성>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 510-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m이격) ○ 내용 - 부지면적 1,252㎡, 건축면적 154.9㎡, 연면적 464.7㎡, 지상 3층(최고높이10.4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 구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4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양ㅇㅇ	 <근생시설 부지조성> 이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18-6 내용 - 부지면적 5,225㎡, 건축면적 583㎡(3동), 지상 1층(최고높이 : 5.7m) ※ 절토량 : 10,573㎡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 구역)
5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하ㅇㅇ	<이동통신용 전주 설치> 위치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10번지 (10m 이격) 내용 사용면적 4m², 높이 1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다가구주 택 신축 (신ㅇㅇ)	지역으로 기존 건물들이 산재 되어 있으나, 새로이 신축하 는 건물의 규모가 크므로, 동	상 심의구역(제1구역)에 해당 하며, 기존 구옥을 철거 후
2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근생시설 부지조성 (김ㅇㅇ)	○ 본 신청 건은 문화재구역으로 부터 약 180m 이격하여 근생 시설 부지를 조성하려는 사항 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허용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 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다가구 주택 부지 조성 (한ㅇㅇ)	○ 본 신청 건은 문화재구역으로 부터 약 70m 이격하여 다가 구 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허용기 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 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연 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4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근생시설 부지조성 (양ㅇㅇ)	○ 본 신청 건은 문화재구역으로 부터 437m 이격하여 근생시 설 부지를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절토량을 조정하여 재신 청하였으나 기 시행중인 허용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 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산의 산봉우리를 절토 및 성토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행 위로 지형을 변형시키므로 경 판보존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5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이동통신 용 전주 설치 (하ㅇㅇ)	되어 있으나, 신청지는 강화 외성 내륙방면으로 10m 이격 되어 있는 지역이며, 강화 외 성뿐만 아니라 여타 문화재 주변 시설물로 인한 역사문화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한 조 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위원	○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내륙 방면으로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입니다. ○ 신청지는 "강화외성"과 약 10m이격되어 있으며, 문화재 옆 해안도로 건너편에 위치

마. 의결사항

-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2-034

1.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 수길원 지정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백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 ㅇ 소 재 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6번지 외
-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3필지 294,420㎡(지적별 면적조서 참조)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1필지, 26,083㎡(지적별 면적조서 참조)
- 지번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191-2
- 추가지정 후 면적 : 4필지, 면적 320, 503㎡(지적별 면적조서 참조)
- (4) 신청사유
- 소령원의 안산 보존 및 수길원의 청룡맥 역사경관림 보존과 원지형 보존을 위함
- * 경기도의 장기구상 계획도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외곽순환국도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훼손 우려

라. 의결사항

- ㅇ 부결
- 소령원의 안산, 수길원의 좌청룡 지역 등에 대한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한 후 검토 필요

파주 수길원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구분		소재지	지별	I 지목		지번면적 지정신청 (m') 면적(m')		소		유	사 자	
十七 :	지 번		! ^1 =	(m²)	성		명		주	소		
スラ]정 고역	광탄명 기산리	191-2	임	26,083	26,083						

파주 수길원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구분	소레기	지 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	유	자	
一七七	소재지	지 번	시국	(m²)	(m²)	성	명	주		소	
지정 구역	광탄명 영장리	산2	임	15,174	15,174						
지정 구역	광탄면 영장리	266	묘	4,436	4,436						
지정 구역	광탄면 영장리	산1-15	임	274,810	274,810						
계					294,420						

별첨 : 수길원 입지 현황

<별첨>

수길원 입지 현황 등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조선 21대 영조(재위 1724~1776)의 후궁인 정빈이씨(1693~1720)의 무덤이다. 정빈이씨는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진종:정조의 양아버지)를 낳았다.

무덤 주변을 둘러싸는 담장(곡장)이 있으며, 비석과 문인석을 비롯하여 여러 석물들이 있다. 위패는 조선시대 역대 왕이나 추존된 이의 생모인 후궁들의 위 패를 모신 칠궁(七宮)의 하나인 연호궁에 안치되어 있다.

위치 및 지황(地況)과 주위교통본체는 소령원과 같다.(소령원과 수길원은 동일 원림 내에 있다.

원소는 산록 중단부에 서남향으로 조성되었고, 봉분 후면(동북측)에는 곡장(曲墻)이 설치되었으며 전면(서남측)에는 비석, 혼유석, 장명등이 배치되었고, 그 좌우에 망주석, 문인석이 대칭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원소 동남측 하단부에 남향으로 정자각이 세워졌으나 현재는 기단부만 남아 있으며, 그 서남측엔 수복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주초석만이 남아 있다.

□ 연혁·유래 및 특징

조선(朝鮮) 제(第)21대(代) 영조(英祖)의 후궁(後宮) 정빈이씨(靖嬪李氏)의 묘소(墓所)이다. 정빈이씨(靖嬪李氏)는 숙종(肅宗) 20년(年)(1694) 이준철(李竣哲)의 여(女)로 태어나 영조(英祖)의 후궁(後宮)이 되어 숙종(肅宗) 45년(年)(1719)에 제일왕자(第一王子)인 종((종)·진종(眞宗)·정조(正祖)의 양부(養父))을 출산하였다. 경종(景宗) 원년(元年)(1721) 11월(月) 16일(日) 별세(別世)하였으며 그의 위패(位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철궁(七宮)안에 있는 연호궁(延祜宮)에 봉안되어 있다. 묘(墓)의 시설로는 봉분(封墳)(병풍석무(屛風石無)) 곡장(曲墻) 혼유석(魂遊石)장명등(長明燈)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石) 사초지(莎草地)가 있으며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의 건물(建物)은 없어지고 기단석(基壇石)만 남아있다.

기록은 묘비(墓碑)의 전면(前面)에 「대한온(大韓溫)」이라 새겨져 있고 후면 (後面)의 비문(碑文)은 「빈성이씨기선함양인신기입궁신축시봉소훈갑진갱봉…(嬪姓李氏其先咸陽人辛己入宮辛丑始封昭訓甲辰更封 …)」이라 새겨져 있다. 신도비(神道碑)는 황명종정기원후구십괄년 기사년(皇明宗禎紀元後九十八年 己巳年)(1725)에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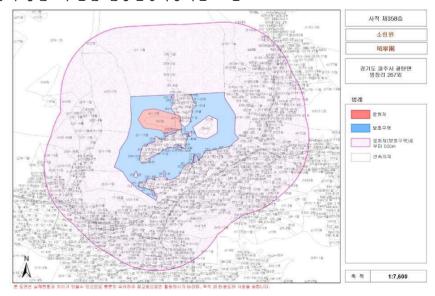
수길원은 조선조 진종대왕(추존)의 사친인 정빈이씨의 원소이다. 정빈이씨는

이준철의 女로 숙종 20년(1694)에 태어났으며 숙종 27년(1701)에 입궁하고 영조의후궁이 되었으며 숙종 45년(1719) 2월 15일 한성부 북부 순화방에 있는 창의궁(彰義宮)에서 진종대왕(추존 : 장조대왕의 형)을 낳았고, 병질로 장동 사가에서조리하였으나 경종 원년 11월 16일 춘추 28세로 돌아갔으며 그해 12월 14일 양주고령동 옹장리 곤향원에 장사를 지냈다. 정조 2년(1778)에 경복궁 영춘문 밖에연우궁을건립하고 정빈이씨의 신판을 봉안하였으며 융희 2년(1908)에 육상궁으로이안(移安)하였다.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고려왕조에 이어 1392년 개국한 조선왕조는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할때까지 518년간 27대의 왕위 계승이 있었는데 조선조 왕실의 묘소는 그 품격에따라 릉,원,묘로 구분되며 제왕후비의 릉 42기, 왕의 사친이나 왕세자, 그빈의 묘소인원 14기, 대군,공주, 왕의 후궁, 폐위 왕의 묘 52기 중 북한에 소재한 덕인릉, 지릉, 숙릉, 의릉, 순릉, 정화릉, 재릉, 후릉을 제외한 왕릉은 1970년 5월27일 사적으로지정(보호구역은 '73.4.25)되었으나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원,묘 중 경기 일원에분포되어 있는 원 6기, 묘 6기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문화재 위원회심의 결과 묘제상의 특정 뿐만 아니라 역사성,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중요한 유적이다.

□ 수령원·수길원 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



□ 현황사진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2-035

1. 사직단 보수 · 정비 사업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1호 「사직단」 관리가 2012. 1월부터 문화 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긴급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사직단 일부 시설물이 원형과 다르게 변형 및 노후되어 있고 사적지 위상에 걸맞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보 고 자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사직단(사적 제121호)/'63. 1. 21지정
-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38번지
- (3) 보고내용<원형고증 설계용역 시행 및 경상 유지관리 보수>
- 양식에 맞지 않은 유문, 주문, 신로, 판위 원형고증 설계용역 시행 / 홍살, 빗살, 태극 등
- ㅇ 주원권역 양식에 맞지 않는 소나무 4주 제거 및 가로등 이전
- 사직단 면석 흙물 청소, 안향청 후면 창고 철거, 기와번와 보수, 파손된 기단바닥 강회다짐 시공, 박석 드잡이, 잔디보식, 포방전 교체, 조경정비 등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ㅇㅇㅇ 위원, ㅇㅇㅇ 교수, ㅇㅇㅇ 사직대제 예능 보유자('12.2.1)

- 전체적인 복원방향은 사직서전도(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를 따르고 조선고 적도보 사진을 참조한다.
- 양식에 맞지 않은 유문, 주문, 판위는 사직서전도, 고적도보 사진을 참조하여 도면을 작성하여 재검토 함 / 설계추진 과정에 자문회의 개최
- ㅇ 주원권역내 소나무(4주)는 양식에 맞지 않고 전통조경 수형이 아니므로 제거

- ㅇ 어도박석, 안향청 보수, 포방전, 가로등은 조속히 정비토록 함
- 주원권역 담장 밖에 현대식으로 열식된 조경수는 사적지에 맞지 않으므로 정리토록 함

마. 그간 추진실적

- 사직단 보존관리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11.6~10월
- ㅇ 사직단 관리단체 변경고시('11.11.2 관보) 및 종로구 알림: '11.11.7
- 사직단 직접관리에 따른 재산이관 목록 협의 : '11.11.17
- 사직단 문화재청 직접관리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11.12.15
- 현 사직단관리소 리모델링사업(직영사업단) 완료 : '11.12.29
- 사직단 재산이관 (종로구) : '11.12.30
- 건축물, 수목류, 각종 시설물(cctv, 가로등, 운동시설, 침입감지기) 등

바. 향후 조치계획

- 정비가 시급한 안향청 보수, 소나무 제거, 가로등 이전, 포방전 교체, 사직단 면석 청소. 잔디보식. 주변 조경정비 직영사업단 정비 / '12. 3월말까지
- 신로, 판위(임금, 세자), 유문, 주문 등 원형고증 설계용역 시행 : '12. 2~4월 말까지 - 추진과정에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사.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2-02-036

2. 화성 융릉과 건릉 내 소방도로 개설사업 보고

가. 보고사항

용릉에 위치한 목조건축물, 산림 화재예방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 차량 출입을 위하여 융릉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현재 융릉 정자각, 비각 등 목조건축물과 능침 등으로 차량 진입 시 금천 교를 통하는 도로만 있음
- 융릉 금천교 상판석 통과시 신속한 이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상판석이 훼손됨

<금천교 상판석 훼손 보존처리 공사 실시 - 융릉관리소-1005(2011.08.02)>

- 1) 공 사 명 : 융릉 금천교 상파석 보존처리 공사
- 2) 현 황 : 융릉 금천교 상판석(2개) 균열 발생(2번 및 6번)
- 3) 공사내용
- ㅇ 융릉 금천교 상판석 보존처리
- 정리 및 청소, 세척, 접합복원
- 기록 및 자료정리, 보고서 제작
- 4) 공사기간 : 10일

다. 주요내용

- (1) 보고자: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1970.05.26지정
-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 1-1번지 일원
- (3) 사 업 명 : 융릉 소방도로 개설공사
- (4) 사업내용 : 융릉 진입 소방도로 설치공사(55m), 소요예산 : 20,000천원

라. 의결사항

- ㅇ 원안접수
- 시굴조사 후 사업시행 필요

3. 화성 융릉과 건릉 내 정조대왕 초장지 발굴지역 CCTV 설치사업 보고

가. 보고사항

육건릉 경내 정조대왕 초장지 1차 발굴지역(2011.10.24~12.21)의 부분 복토 작업 후 2차 사업(2012년 중 발굴예정) 시행까지 도굴 방지를 위한 침입감시 CCTV 설치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정조대왕 초장지 1차 발굴(2011.10.24~12.21)후 부분 복토 작업 후 잔토가 쌓여있는 상태임
- ㅇ 정조대왕 초장지의 정확한 고증을 위하여 2차 발굴이 필요함
- ㅇ 도로변 인접지역으로 도굴위험이 상존하여 침입감시 CCTV 설치가 필요함

다. 주요내용

- (1) 보고자: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1970.05.26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 1-1번지 일원(300㎡)
- (3) 유적현황 : 정조대왕 초장지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1차 발굴시 성토층이 확인 되고, 칠기함, 명기, 난간석, 지대석, 백자소호 7점이 출토됨
- (4) 보고내용 : 발굴지역 도굴방지를 위한 침입감시 CCTV 설치
- (5) 사업현황
- 사 업 명 : 정조대왕 초장지 발굴지역 CCTV 설치사업
- o 사업내용 : 융릉 정자각 CCTV 함체에서 초장지 발굴지역까지 관로매설 및 맨홀설치, CCTV설치 / 소요예산 : 18,500천원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2-02-038

4. 남양주 사릉 관리사무소 건립 보고

가. 보고사항

재실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 사릉(사적 제209호)에 관리사무소를 건립하여 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실을 원형대로 보존하고자사릉 관리사무소 건립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중 사릉은 재실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재실의 원형훼손이 우려되고 능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능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재실의 원형보존을 기하고 세계유산 으로서의 면모를 더욱더 다지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보고자: 000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사릉(사적 제209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08번지
- (3) 보고내용
- ㅇ 위치 : 사릉 내 나대지(능에서 400m, 재실에서 우측으로 150m떨어진 나대지)
- ㅇ 추진방향
- 능 경역과 조화되는 적정 규모의 관리사무소 건립
- 사릉은 비공개 지역으로 관리사무소만 건립하되 추후 공개 시 1층 일부 공간(20평)에 역사문화관 조성
- ㅇ 사 업 비 : 1.470.000천원
- 사업기간 : 2012. 3 ~ 10월
- ㅇ 건물 규모 및 양식
- 규모 : 1동, 지하 1층, 지상 1층, 463㎡(140평, 지하층 227㎡, 지상층 236㎡)
- 구조 및 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친환경 외장(와편붙임) 마감
- 층별 용도
- ·지하층: 문서고, 관리반 대기실, 화장실, 식당 등

- · 1층 : 사무실, 상황실 등
- ㅇ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1차(2010. 11. 03) : 건립위치 선정
- 2차(2010, 11, 18) : 평면 및 입면계획 검토
- 3차(2011. 02. 07) : 평면계획 및 외부형태 등 검토 / 설계안 확정

라. 향후 추진계획

- ㅇ 사업계획과 같이 관리사무소 건립 추진
- ㅇ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기술지도를 받아 공사 추진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2-02-039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주변 화수교 보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9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 지	전북 남원시	000	 ◇화수교 보강> ○ 위치: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1037번 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 ○ 사업내용 - 규모(변동없음): 63m×6.4m, h=4.15m - 보강내용: 슬라브 탄성범 설치, 교 각 브라켓 설치, 교대 단면 보강 	허가	′12.01.25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 강화군	000	 <강화여고 기숙사 중축 기간 재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관청리 944-2 (40m 이격) ○ 당초 - 지상4층, 지하1층, 대지면적 6,914㎡, 건축면적/연면적 2,005.19㎡/8,183.59㎡, 최고높이 14.3m, 철근콘크리트조, 주자창(소형 40대, 장애인 2대) - 기간 : 2010.10.19~2011.12.31 ○ 변경허가 - 규모 변동 없음 - 기간 : 2010.10.19~2012.04.30 		′12.01.03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남궁ㅇ	<지하수 개발> ○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324-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 ○ 사업내용 - 상부 보호공 설치 : h=0.8m - 수위측정관 설치 : 25mm - 유량계, 출수장치 설치 - 지하 60m 굴착 : 케이싱 150mm	허가	′12.01.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임ㅇㅇ	<우광농지개량> ○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319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 ○ 사업내용 - 성토량 : 1,327㎡ - 토사측구(D300) : 133m - PE이중벽관(D400) : 7m 	허가	′12.01.27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 구리시	000	 <도시계획도로(새마을부탁~개나리아파트) 개설 기간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27 외 14필지(255m이격) ○ 당초 - 총연장 : 245m - 폭 원 : 10.0m - 총면적 : 2,898㎡ - 기간 : 2011.08.05~2011.12.30 ○ 변경허가 - 규모 변동 없음 - 기간 : 2011.08.05~2012.12.30 	허가	′11.12.30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경기 고양시	•] 0 0	 수종갱신 및 조림사업>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52-7번지(312m 이격) 사업내용 사업면적 5,000m² 총본수 392, 벌채본수 392, 잣나무 1,500본 식재 기간 : 허가일~2012.06.30까지 	허가	′12.01.03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000	 <정월대보름축제 개최> ○ 위치 :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437-1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목적 : 민속문화 전통계승 및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 일시 : 2012.2.6(1일간) - 장소 : 낙안읍성 - 주최/주관 : 낙안면, 낙안읍성(정월대 보름 민속한마당큰잔치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액막이굿 등 주민안녕 기원행사, 동제 등 민속행사, 국악한마당 등 공연행사, 면민노래자랑 등 경연행사, 연날리기 등 체험행사 - 횃불들고 성곽돌기, 달집태우기 등 	허가	′12.01.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경기 용인시	윤ㅇㅇ	 ○ 문쟁시설 부지조성(허가사항 변정허가)>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88-1번지 외 ○ 당초 - 위치 : 보정동 988-1번지 외 3필지 - 부지면적 : 4,343㎡ - 건축면적/연면적 : 660㎡/1,034㎡ - 최고높이 : 5.6㎡ - 허가기간 : 2011.12.29 ~ 2014.2.28 ○ 변경사항 - 부지위치 : 보정동 988-1번지 외 4필지(증 1필지) - 부지위치 : 보정동 988-1번지 외 4필지(증 1필지) - 부지면적 : 4,750㎡(증407㎡) - 건축면적/연면적 : 660㎡/1,034㎡ - 최고높이 : 5.6㎡ - 허가기간 : 2012.2.1 ~ 2014.2.28 ○ 허가조건 - 금회 추가된 사업 부지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청 발굴제도과와 협의 후 그 결과를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발굴제도과 협의 결과 매장 유구 보존 가치에 따라 사업 추진시 문제가 있을시에는 동 사업의 시행이 전면 재검토 될 수 있음 	조건부 허가	′12.02.01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000	 < 당당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372번지 ○ 사업내용 - 창녕 교동 고분군 탐방로 잔디식재 및 정지(255m) - 창녕 박물관 편의시설 설치 · 파고라 1동, 탁자 2개, 평의자 12개 - 박물관~송현동 고분군 농로 노면 마사토 정지(240m) - 송현동 고분군 탐방로 잔디식재 및 보호매트 설치(230m) - 허가기간: 허가일~2012.12.31까지 ○ 허가조건 - 파고라는 등나무 등을 식재하여 지붕 차양 기능을 보완할 것 - 송현동 고분군 탐방로 잔디보호매트 는 측면에 통나무나 로프를 설치하여 구간을 구분하고, 반드시 관계전 문가 자문을 받아 적정의 소재, 크기 등을 결정 후 사업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12.01.20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